



제 419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항만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처분 시 ‘정당한 사유’ 고려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4706호)

2024.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항만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처분 시 ‘정당한 사유’ 고려	2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 부
2. 제 출 일 : 2024. 10. 16.
3. 회 부 일 : 2024. 10.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다는 사유로 해당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수행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항만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처분 시 ‘정당한 사유’ 고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관리청이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다는 사유로 등록취소 등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우, 사업 수행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26조의5).

현행	개정안
제26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① 관리청은 항만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항만운송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①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사업 수행 실적이</u> 1년 이상 없는 경우	4. <u>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 실적이</u> -----
5.·6. (생략)	5.·6.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의5(등록의 취소 등) ① 관리청은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	제26조의5(등록의 취소 등) ① --- ----- ----- -----

현행	개정안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 -----. ----- -----.
1. ~ 3. (생략) 4. <u>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u>	1. ~ 3. (현행과 같음) 4. <u>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 실적이 -----</u>

나. 검토의견

□ 항만운송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항만운송을 하는 것으로, 종류별로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이 있고, 이를 관리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총 581개 업체가 있음.¹⁾

- 항만운송관련사업은 항만에서 선박에 물품이나 역무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선용품공급업·선박연료공급업·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을 말하고, 선용품공급업이란 선박에 음료, 식품, 소모품, 밧줄 등 선용품을 공급하는 사업이며, 항만운송관련사업은 현재 총 5,593개 업체가 있음.

1)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항만운송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항만운송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사업의 등록) ① 항만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하역사업(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사업)
2. 검수사업(제2조제1항제14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3. 감정사업(제2조제1항제15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4. 검량사업(제2조제1항제16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항만운송관련 사업현황]

(2023. 12. 기준)

업종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신고	항만 하역업	검수·감정·검량사업	항만 용역업	선박연료 공급업	선박 수리업	컨테이너 수리업	선용품 공급업
	등록		등록				신고
업종수	462	119	1,105	776	786	100	2,826

※해양수산부

□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 (이하 ‘항만운송사업자등’ 이라 함)가 1년 이상 사업 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이 때 ‘정당한 사유’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²⁾

항만운송사업자등의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등록취소 등의 제재처분을 하게 되어 항만운송사업자

- 2)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① 관리청은 항만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항만운송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
 2. 제6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에 규정된 죄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4.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5.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등록한 경우
 6.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
- 제26조의5(등록의 취소 등) ① 관리청은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1의2.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제26조의3제7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
 4.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5.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나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³⁾

□ 개정안과 같이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할 경우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참고로, 개정안은 정부 차원에서 법제처 주도로 ‘영업취소사유 합리화를 위한 법령정비’ 차원에서 제출된 것으로 영업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 수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그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할 필요가 있어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하도록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것임.
- 위와 같은 이유로 정부가 제출한 법령정비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을 비롯하여 총 25개임(첨부 1 참고).

3)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2두11752 판결에서는 정당한 사유를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음.

‘정당한 사유’의 의미 (판례)

- ▶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2두11752)
- ‘정당한 사유’란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실무적으로는 현제도 현행법 제26조제1항제4호 및 제26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행정기본법」 제22조4) 및 동법 시행령 제3조5)에 따라 제재처분시 위반행위의 동기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개정안과 같이 행정처분 집행과 관련하여 해당 처분의 근거법규에 정당한 사유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면 해석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개정안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송사업자등의 경영상 부담 완화를 위해 환경적·외부적 요인을 고려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법안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19

- 4) 「행정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②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2. 위반행위의 결과
3. 위반행위의 횟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5)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재처분의 기준)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2.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 시정·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

참고 1

정당한 사유' 를 고려하도록 한 정비대상 법령 목록

○ 법률 : 25개 법률, 29개 과제

연번	소관 부처	정비대상 법령		취소사유
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3호	· 부가통신사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폐업명령 가능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3조 제3항 제3호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지정취소 가능
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제3호	· 클라우드컴퓨팅 교육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지정취소 가능
4	교육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2호	· 외국교육기관이 개교예정일부터 1년 이상 개교하지 아니한 경우 설립승인 취소 가능
5	국방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 제조·판매업자가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 취소 가능
6	금융 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3호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대부업 등록 취소 가능
7		온라인투자연계금 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제5호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취소 가능
8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	·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까지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착공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과 사업장 건축허가의 취소 등 가능
9		식물방역법	제41조 제2항 제2호	· 허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가능
10		초지법	제12조 제1호	·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1년 이상 영업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 취소 가능
1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 6제1항 제5호	· 초지조성허가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시작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허가 취소 가능

연번	소관 부처	정비대상 법령	취소사유
12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제3호 · 장애인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 취소 가능
1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1조 제4항 제3호 ·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일로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지정 취소 가능
14		전기공사업법	제21조 제2호 · 지정교육훈련기관이 3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교육훈련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지정 취소 가능
15			제28조 제1항 제7호 ·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한 경우 등록 취소 가능
16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법	제9조 제2항 제3호 ·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 취소 가능
17	해양수산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 ·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 취소 등 가능
18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 2제2호 ·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 취소 등 가능
19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4호 · 항만운송사업자가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등록 취소 등 가능
20			제26조의 5제1항 제4호 ·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등록 취소 등 가능
21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 취소 가능

연번	소관 부처	정비대상 법령		취소사유
22	환경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3호	·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 승인 취소 가능
2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호	· 인가를 받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공사 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인가 취소 가능
24			제17조 제5호	· 인가를 받은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 공사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인가 취소 가능
25		수도법	제63조 제1항 제1호	· 인가를 받은 수도사업 또는 전용수도의 공사 시작 예정일 또는 공사 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인가 취소 가능
26			제63조 제1항 제2호	· 인가를 받은 수도사업의 급수 개시 예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수돗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인가 취소 가능
27		폐기물관리법	제27조의 2제2항 제2호	·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 취소 등 가능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 6제1항 제5호	· 환경컨설팅회사가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 취소 등 가능
29		환경보건법	제23조의 2제5항 제4호	·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지정 취소 등 가능